

**『2015 글로벌 창업활성화 사업』
해외창업·진출 지원(일반형) 참가자 모집공고**

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(예비)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「2015 글로벌 창업활성화 사업」 해외 창업·진출지원(일반형 1차) 참가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3월 17일
중소기업청장

1. 사업개요

☐ 사업목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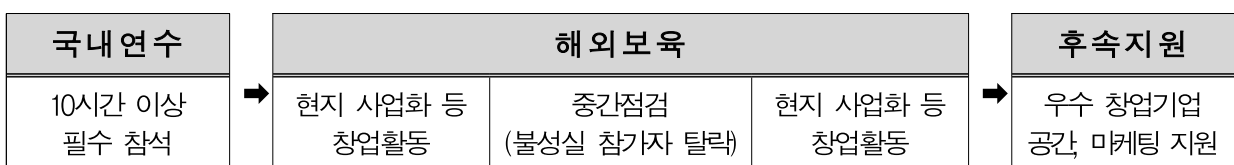
- 글로벌 시장 지향의 유망 (예비)창업기업을 발굴하여 국내 연수 및 해외보육을 통한 창업기업의 현지 창업·진출 지원

☐ 세부 프로그램 개요

구분	지원규모	모집시기	지원내용	비고
일반형	38팀 내외	'15.3.23.~4.22.	국내연수+해외보육	-
자율형*	5팀 내외	별도 공고	프로그램 참가비	-

* 자율형 : (예비)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창업선진국(미국, 영국, 독일, 덴마크, 싱가포르)의 현지 엑셀러레이터 보육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프로그램 참가비를 지원 (일반형과 중복지원 불가)

< 해외진출 프로그램-일반형 운영절차(안) >



* 국가 및 운영기관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음

□ 지원규모 : 24.5억원, 38팀 내외

< 국가별 신청분야 및 지원규모 >

NO	국가	지역(도시)	신청분야	지원규모	예정 지원기간	
					국내연수	해외보육
①	중국	북경 또는 상해	모든 업종	14팀 내외	10시간 이상	3개월 내외
②	일본	동경	모든 업종	3팀 내외		
③	인도네시아	자카르타	모든 업종	3팀 내외		
④	싱가포르	-	모든 업종	5팀 내외		
⑤	미국	실리콘밸리	모든 업종	5팀 내외		
⑥	미국	뉴욕	모든 업종	3팀 내외		
⑦	덴마크	코펜하겐	ICT, 에너지, 바이오 우선	5팀 내외		
⑧	영국	런던 또는 셰필드				

* 국가 및 지역은 복수 선택이 불가함(상기 항목(①~⑧) 중 택1)

** 신청팀 수 또는 서류평가를 통과한 팀 수가 3개 미만일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, 국가별 해외보육 기간은 현지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□ 지원내용

- (국내연수) 창업기업의 기술 및 지식재산권 보호, 투자유치를 위한 피칭교육 등(10시간 이상)
- (해외보육) 사무 공간 제공, 분야별 현지 전문가 멘토링, 전문가 특강 등 창업아이템 현지화 일괄 지원
 - 선정기업의 창업사업화 단계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, 운영기관 및 현지 엑셀러레이터가 프로그램 운영
 - 프로그램 참가비, 왕복 항공운임, 현지 숙박비 전액 지원(단, 현지 교통비, 식대 등 창업활동에 소요되는 실비용은 선정기업이 전액 부담)

< 해외보육 지원내용(안) >

구분	세부내용
사무공간 제공	• 현지창업 준비에 필요한 공간 제공
멘토링	• 분야별 현지 전문가 멘토링 운영
전문가 특강	• 현지 시장분석, 성공전략 등 강의
기타 행사	• 현지 VC, 엔젤 등과 네트워킹, 데모데이, IR 개최

* 국가 및 운영기관의 특징에 따라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구성

2. 지원대상

- (신청자격) ①예비 창업자 또는 ②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인자로 ③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
- 단,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창업아이템(베타서비스 버전, 양산직전단계의 시제품 등)을 보유하고 현지 시장 진입 및 투자유치 준비가 완료된 기업을 우선 선정
 - * 2인 이내 팀으로 신청 가능하며, 대표 또는 팀원 중 1인은 반드시 현지어 또는 영어에 능통하여야 함(팀으로 신청하여 선정 시, 팀원도 선정자로 간주하며, 팀원은 동사업 수행과 관련된 모든 책임과 의무를 대표와 동일하게 지게 됨)
 - ** 선정기업의 대표·팀원이 현지 파견기간의 20% 이상 보육장소에 속한 도시를 이탈하고 보육 프로그램의 20% 이상 불참할 경우, 사업 중단으로 간주하여 지원금 환수 및 추가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

① 예비 창업자

☞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(개인/법인)이 되어 있지 않은 자

- * 팀으로 신청할 경우, 팀 구성원 전원이 예비창업자이어야 함

②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

☞ 2012년 1월 1일 이후 기업을 설립한 자

- * 개인사업자(법인전환 포함) : 사업자등록증명 상 '사업개시일(개업일)' 기준
단,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포괄 양도 양수한 경우 개인사업자 사업개시일 기준
- * 법인사업자 : 법인등기부등본 상 '법인설립등기일' 기준

③ 지원제외 대상(공고일 기준)

☞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개인, 기업

- * 단,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(프리워크아웃),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,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 면책 선고,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,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자금을 받은 경우,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개인, 기업은 신청(지원) 가능

☞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개인, 기업
* 단,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(체납처분유예신청), 선정 후 협약 전까지 국세,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(기업)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(기업),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(기업)는 신청(지원) 가능
☞ 휴업 중인 사업자(개인/기업)
☞ 중소기업청 및 타 부처의 「글로벌 진출사업」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개인, 기업
* 단, 공고일 현재 단기(4주 미만) 현지파견 프로그램(공간, 코칭, 멘토링 제공 및 창업활동지원 등) 참가를 완료한 자는 신청 가능
☞ 중소기업청 및 타 부처의 「창업사업화 지원사업」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개인, 기업([붙임 1] 참조)
* 단, 공고일 현재 수행을 완료(협약종료)한 자는 신청 가능
☞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, 기업
* 지원기관으로부터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를 받은 자 등
☞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개인, 기업([붙임 2] 참조)

3. 신청 및 절차

□ 신청기간 및 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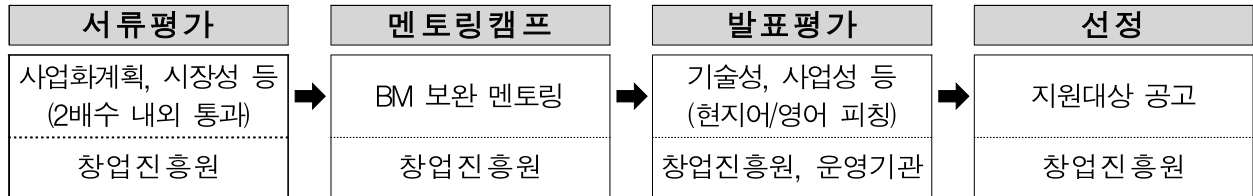
- (신청기간) '15.3.23.(월) ~ '15.4.22.(수), 18:00 까지 (기한 엄수)
- (신청방법) 온라인(www.changupnet.go.kr) 서류 제출

□ 신청절차

- 1단계 : 회원가입
 - 창업넷 홈페이지(www.changupnet.go.kr) 에 회원가입(신규)
- 2단계 :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
 - 창업넷 모집공고에 첨부된 제출서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
- 3단계 :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
 - 창업넷 사업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제출서류 양식 업로드
- 4단계 : 접수 확인 및 접수증 출력
 - 온라인 신청서, 파일 업로드 및 접수완료 상태 확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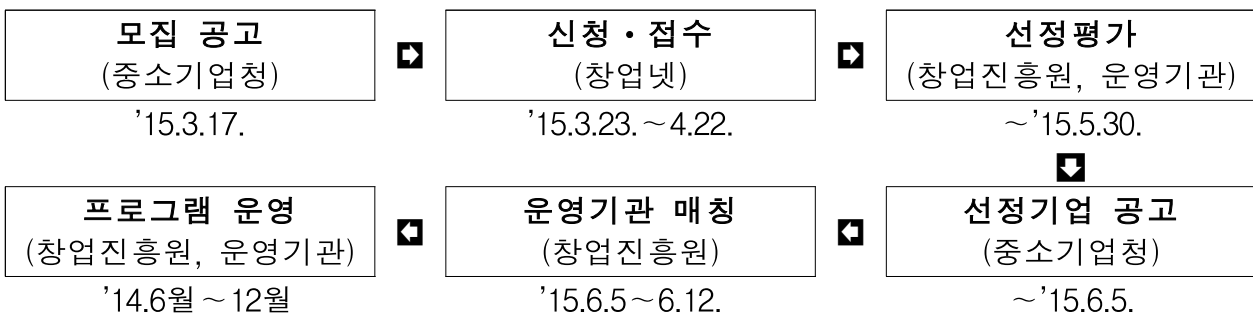
4. 선정평가

□ 평가절차



- **(서류평가)** 사업화계획의 구체성과 현지 시장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가별 지원규모의 2배수 내외를 멘토링캠프 참가대상으로 추천
- **(멘토링캠프)** 전문 멘토단이 (예비)창업자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BM 보완을 위한 멘토링 실시
 - * 전문 멘토단 : 선도 벤처기업인, VC 등으로 구성
- **(발표평가)** 멘토링 내용을 반영하여 발표자료를 작성하고, 창업아이템의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현지어 또는 영어로 발표
 - * 현지 운영기관 전문가가 배석하여 적격여부 평가 병행
- **(선정)** 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지원대상을 선별하고, 선정기업과 국가별 운영기관 매칭
 - * 단, 선정기업과 운영기관 양방이 매칭에 동의하여야 최종 선정

5. 추진일정



*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일정에 따라 현지진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.

6. 기타 사항

□ 신청 전 숙지사항

-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필수 요건을 만족하지 않은 자가 신청할 경우 별도 안내없이 평가 및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
-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필수 항목을 누락한 경우 선정 통보 이후라도 선정 취소, 정부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추후 제공할 동사업 운영지침 및 기준에서 정하는 바 또는 창업진흥원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, 공고문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

□ 사업수행 관련 유의사항

-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해외보육 참가 전 선정이 취소되며, 현지 파견 후 발견 시 선정취소와 더불어 기지원 정부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
 - 국내연수에 특별한 사유없이 불참할 경우
 - 진출국가의 비자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
- 현지에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불이익과 책임은 선정기업에게 귀속(팀원 포함)
 - 현지 법규 준수
 -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연락체계 유지
 - 현지 질병 등에 대비하여 개인의 위생 관리

- 도난, 분실 등에 대한 주의
- 보육장소가 속한 도시를 벗어날 경우 반드시 사전허가를 득할 것
- 모든 참가자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나, 프로그램 外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건·사고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으로 간주
- 선정기업의 현지 사업화추진 성과평가를 통한 중간 탈락제 실시
- 현지 시장 적합성 및 창업활동의 적극성,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“부적합”으로 판정된 선정기업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

□ 문의처

- (사업 관련) 글로벌창업팀 (042-480-4331~4)
- (창업넷 관련) 창업진흥원 콜센터 (“☎1357”(내선 3))

【붙임 1】

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예시

- 창업선도대학 창업아이템 사업화
- 창업맞춤형사업(창업기관 맞춤형, 연구원창업 포함)
- 선도벤처연계기술창업
-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지원사업
- BI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사업
- 스마트창작터(창업팀)
- 스마트벤처창업학교
-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
- 청년창업사관학교

- * 상기 사업과 본 공고의 2015년 신청기한이 겹치는 경우 복수의 사업에 중복하여 신청은 가능하나, 최초 선정된 사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
- ** 상기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중소기업청 및 타부처(지자체 포함)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대하여도 추후 검토를 실시하여 협약기간이 중첩될 경우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음

【붙임 2】

「글로벌 창업활성화 사업」 해외진출 프로그램 지원제외 대상업종

*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을 지원대상 업종으로 하되, 아래 업종은 지원대상 제외

업 종	품목코드	해 당 업 종
제조업	33402中	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
	33409中	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
건설업	41~42	건설업(산업플랜트 건설업(41225),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(41224), 조경건설업(41226), 방음 및 내화 공사업(42203), 소방시설 공사업(42204) 제외)
도매 및 소매업	451	자동차 판매업
	452中	자동차부품 및 내장품판매업 중 소매업
	45302	모터사이클 및 부품소매업
	46102中	주류, 담배 중개업
	46331, 3	주류, 담배 도매업
	47	소매업
운수업	491, 2	철도 운송업, 육상 여객 운송업
	50中	수상운송업 중 여객운송업
	51中	항공운송업 중 여객운송업
	52914	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
	52915	주차장 운영업
숙박 및 음식점업	55~56	숙박 및 음식점업 * 호텔업, 휴양콘도 운영업,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
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	5821中	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금융 및 보험업	64~66	금융 및 보험업
부동산업	68	부동산업
임대업	6911	자동차 임대업
	692	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
전문서비스업	711~2	법무,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
	7151, 2	회사본부, 비금융 지주회사
수의업	731	수의업
사업지원 서비스업	752	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
	753	경비, 경호 및 탐정업(보안시스템 서비스업(75320) 제외)
	759	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(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(75991 중 콜센터 서비스업), 전시 및 행사대행업(75992), 포장 및 충전업(75994) 제외)
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	84	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
교육서비스업	85	교육서비스업(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(8565), 온라인 교육학원(85504) 중 기술 및 직업훈련교육은 제외)
보건업	86	보건업
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	902	도서관,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
	91	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(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(9113),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(9119) 제외)
협회 및 단체	94	협회 및 단체
기타 개인 서비스업	96	기타개인서비스업(산업용세탁업(96911) 제외)
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	97~98	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
국제 및 외국기관	99	국제 및 외국기관